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51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최민희·김현정·박해철

유동수 • 이원택 • 전재수

정동영 · 채현일 · 추미애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소요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현재의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으나,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의 예방 및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안 제115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5條(騷擾) 多衆이 集合하여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하의 벌금에 처한다.		